

〈자료〉

- 오물청소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건설공사 시공감리규정

오물청소법시행규칙중개정령 (84. 2. 10)

◎보건사회부령제739호

오물청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안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하는 변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소”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안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하는 변소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등으로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식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청문에 정일 10일 전에 당해 오물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오물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문일 전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오물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중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청장이 정한다.

제17조 본문중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을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타당성조사서를”로 하고, 동조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타당성조사서를 검토하여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적합통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분류·퇴비화 및 소각시설
 - 가. 시설 및 설비의 개요에 관한 설명서
 - 나. 설치 후 1년간의 관리비소요예산액명세서
 - 다. 처리결과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과 그 처분방법에 관한 설명서

1. 매립시설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설명서 및 명세서
 - 나. 매립으로 발생된 오염된 물의 처리계획서
 - 다. 매립지의 확보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과 그 위치 면적 및 처리가능량을 알 수 있는 서류

④ 환경청장은 제3항의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청장이 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별표1과”를 “별표1의2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천정에는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을 “천정에는 지름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수세식변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 청소지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설치된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량하여야 한다.

[별표 1]

행정 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오물투기금지구역에 오물을 투기할 때(법 제 8 조)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2.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법 제11조제 2 항)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3. 수집구역의 제한 기타 조건을 위반한 때(법 제11조제 3 항)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4. 오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할때(법 제11조제5항)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5. 조례로 정한 오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이상의 수수료 를 받을때(법 제11조제 4 항)	허가취소
6.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 년에 2 회이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처 분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허가취소

주: ① 위반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

제 호

청 문 을 위 한 출 석 요 구 서

귀 하

귀 업소의 오물청소법 제13조의 위반사항에 관하여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변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시간을 지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에 앞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장 소	
지 참 물	

년 월 일 인

주의사항

1.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청문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청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5304 - 69일 190mm × 268mm
 84. 1. 9 승인 (인쇄용지(2급) 70g/m²)

◇ 개정이유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하는 변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세식변소로 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기타 오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그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하는 변소는 시장·군수가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세식변소로 하도록 함(영 제 7 조제 1 항).

나. 오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14조의 2 및 별표 1).

다.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허가(승인) 신청시에 그 타당성 조사서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 입지여건, 처리방식 등을 허가(승인)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영 제 1 조).

〈보건사회부 제공〉

建設공사施工監理規程 <1984. 2. 29 公布>

대통령령 제11,374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과 설계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이하 “감리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 3 호의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감독하에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 또는 시공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자”라 함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어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제 3 조(감리대상공사 등) 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문분야별로 감리자에 의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公共借款事業에 따른 공사로써 借款당사자와의 협조에 의하여 따로 감리절차를 정한 공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공사와 제 2 항제 9 호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 2 조제 1 호 및 제 1 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2.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감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공사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에 의한 감리를 받아야 할 공사의 전문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질 및 기초분야
2. 토목구조물분야
3. 항만 및 해안분야
4. 도로 및 공항분야
5. 철도분야
6. 수자원분야
7. 에너지토목분야
8. 상·하수도분야
9. 灌溉·排水 및 농지조성분야
10. 건축분야
11.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분야
12. 조경분야

③ 발주자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사 외의 공사에 관하여도 감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 의한 감리를 받을 수 있다.

제 4 조(감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는 제 3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 중 감리를 받고자 하는 공사의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경험과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충분한 감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인정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2. 建築士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기술용역육성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

장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분야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용역육성법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따라 감리자에게 특별한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5 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감리자는 그가 감리하는 제 3 조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자(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별표 4 의 비고란 중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책임기술자로 하고, 책임기술자 밑에 필요한 수의 同 전문분야의 기술자(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별표 4 의 비고란 중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두어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 6 조(감리계약) ① 발주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선정되는 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감리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자의 업무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
 - 가. 시행계획의 검토
 - 나. 공정표의 검토
 -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확인
 - 마.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사.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 아. 안전관리의 지도
 -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차. 공정 및 既成高의 査定
 -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감리실시에 관한 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
 - 가. 전문분야별 감리인원의 배치계획
 - 나. 감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근무일정 계획
 3. 감리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4. 감리비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감리자의 계약의무이행에 필요한 성실감리·기밀유지 등의 사항
 6. 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감리계약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외에 감리자가 감리를 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

우의 시공자에의 조속한 시정요구, 필요한 경우의 시공중지 명령,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그 뜻의 발주자에의 보고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7 조(불성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수행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해 기관에 의한 감리자의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감리비) 감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리자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 제 4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용역대가의 기준
2. 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리자의 경우: 建築士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報酬의 기준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투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2월29일까지는 행정투자기관예사회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투자기관을 이 영 제 1 조 및 제 2 조제 2 호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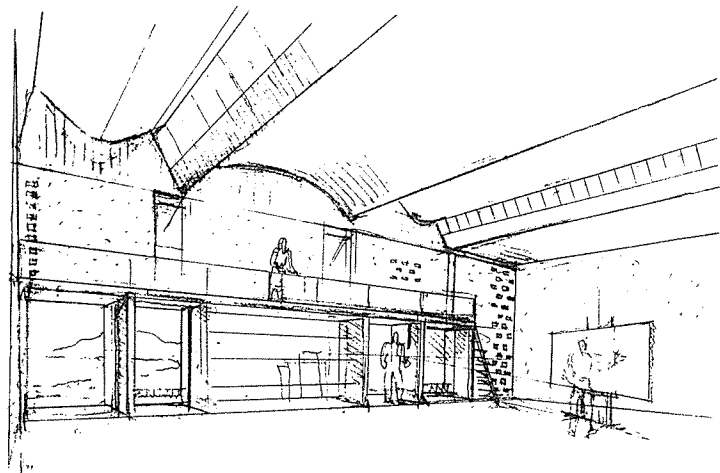
◇建設工事施工監理規程 制定理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는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의 감리를 받게 되는 건설공사의 種別분야를 정함(영 제 3 조).
- 나. 감리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발주자가 선정 하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영 제 4 조제 1 항).
- 다. 발주자는 감리자를 선정 한 경우 그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감리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영 제 6 조).

<법제처 제공>



버리고 줍기보다 안버리는 문화국민